

4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(案)

建設部公告 第47號. 1991年 4月 25日

- 가. 개발이익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존 부과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개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스키장건설사업, 산림훼손허가·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는 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함.
- 나.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준공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,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곱한 면적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면적으로 보도록 함.
- 다.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급조건 등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실제분양한 토지가액을 외교시점지가로 인정하도록 함.
- 라. 착수지점지가는 사업 착수시점이 속한 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

- 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명문화 함.
- 마. 현재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를 통하여 매입한 토지가격을 소명하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하고 있던 것을 공시지가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하도록 함.
- 바. 현재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해 주는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을 사업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 등에 확인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만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의뢰할 수 있도록 함.
- 사. 1990년 3월 2일 당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착수시점지가를 공시지가로 만 산출하던 것을, 국가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.